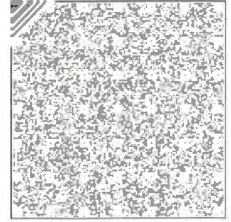




# 안 양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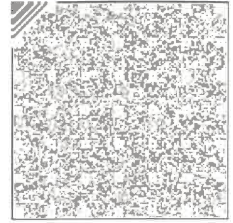


수신 안양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최양례 귀하  
(경유)

제목 안양 석수2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알림

1. 귀 추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안양시 고시 제2009-106호(2009. 11. 5.)호로 변경결정된 안양 석수2지구 도시관리 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며, 같은 법 제 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함 을 알려드립니다.  
가. 고시번호: 안양시 고시 제2024-169호  
나. 고 시 일: 2024. 9. 27.(금)
3. 고시문, 결정조서는 우리시 홈페이지 [고시공고] 및 [안양시보]란에서 확인 가능하 며, 관련 기관(부서)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, 공동(도시계획·건축)위원회 자문 및 심의 의견 및 조치계획 내용, 기부채납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관한 결정 고시일(2024. 9. 27.)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도 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은 효력을 잃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상기 내용 을 참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고시문 및 조서 1부.  
2. 시행지침 1부.  
3. 부서협의의견 1부.  
4. 공동(도시계획·건축)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1부. 끝.



안 양 시



주무관 **이귀영** 도시관리팀장 **박성호** 도시정책팀장 **이선화** 대결 2024. 9. 26. 도시계획과장 **전결**  
 협조자  
 시행 도시계획과-14183 (2024. 9. 26.) 접수  
 우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,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5층 / <http://www.anyang.go.kr>  
 전화번호 031-8045-2567 팩스번호 031-8045-6522 / [lky2920@korea.kr](mailto:lky2920@korea.kr) / 대국민 공개